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59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6. 4. 12.
판 결 선 고	2016.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88,350원(가산금 65,99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5. 5. 9.'은 오기로 보인다(을 제3호증 납세고지서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가. 원고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시설인 'B'(마약중독자 관리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redacted] 가평군 C에 위 교육원의 부속시설로서 연면적 합계 361㎡ 규모의 홍보전시실을 신축하고 2015. 2. 4.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할 의무는 여전히 있음을 전제로, 2015. 5. 11.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1,222,36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5. 5.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2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5. 8.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한편 2015. 10.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취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무신고가산세액에 관하여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우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라고 변경되었다. '지방세관계법'이 '지방세법' 외에 취득세 감면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함께 일컫는 것임(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중이던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후 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 즉, 취득세 감면 전의 세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비록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2014. 1. 1. 법률 제12152호의 개정이유에도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가산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가산세의 산출기준을 감면이 이루어지기 전인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변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두

판사 김종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판사 현영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후 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